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부산고등검찰청
인권보호관/전문공보관 김도형
전화 051-606-3203

보도자료
2023. 5. 31.(수)

제 목 **'돌려차기 살인미수' 사건 항소심 검찰 공소장 변경**
- DNA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강간살인미수죄를 주위적으로 추가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 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(제11조 제1항)
-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- 오늘(5. 31.) 부산고등검찰청은, 이른바 부산 서면 '돌려차기 살인미수' 사건의 항소심 공판에서 강간살인미수죄를 주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징역 35년(위치추적장치부착명령 등)의 중형을 구형하였음
- 이는, 증인들의 증언 내용, 피해자의 청바지에 대한 검증 결과, 대검 유전자 감식실에서 회신된 DNA 재감정 결과(청바지 안쪽 3곳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 검출 등) 등을 통해, 피고인이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강타하여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낸 사실이 추가로 규명된 사정을 반영한 것임
- 검찰은 추가로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1심 구형 의견(징역 20년 등)보다 대폭 가중한 징역 35년 및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을 구형하였음
- 피고인에게 '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'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, 지속적인 피해 회복 지원 방안을 진행할 계획임

I

피고인

- A○○(남, 30세, 무직, 전직 경호업체 직원)

II

공소사실 요지

① 주위적 공소사실 [강간살인미수]

- '22. 5. 22. 새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B○○(여, 26세)를 성폭력 하기 위하여 뒤따라가,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, 돌려차기로 뒷머리를 강하게 걷어차 쓰러뜨리고 머리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하였으며,
 -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어깨에 메고 가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 등을 벗겨내어 성폭력 하려 하여 피해자에게 뇌출혈 등으로 인한 미만성 뇌손상 등을 가함

② 예비적 공소사실 [살인미수] - 공소장 변경 이전 기존 공소사실

- '22. 5. 22. 새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B○○를 뒤따라가,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, 뒷머리를 돌려차기로 걷어차 쓰러뜨리고 머리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하여 미만성 뇌손상 등을 가함으로써 살인미수

III

수사 및 재판 경과

- '22. 6. 20. 부산지검, 구속 기소
- '22. 10. 28. 1심 선고(살인미수 유죄, 징역 12년, 위치추적장치 20년), 피고인 및 검찰 쌍방 항소
- '23. 3. 15. 항소심 제3회~제6회 공판기일 진행 (최초 신고자, 출동 ~5. 17. 경찰관 및 피해자 언니 증인신문, 피해자 청바지 검증)
- '23. 5. 31. 항소심 결심 공판 (피해자 의복 DNA감정결과 회신, 강간 살인미수죄로 공소장변경 등)

① 피고인에게 강간살인미수죄를 적용

- 피해자의 사건 당시 착용 의복에 대한 DNA 재감정을 진행하여, 대검 유전자 감식실로부터, 위 청바지 안쪽 허리와 허벅지 부위 등(바지를 벗겨 내는 과정에서의 접촉 부위로 판단)에서 피고인의 Y염색체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받았고,
- 피해자가 사건 당시 착용한 하의는 단추 2개가 체결되는 '하이-웨이스트' 청바지로 쉽게 벗겨지지 않는 형태임을 확인한 검증이 진행되었으며,
- 항소심에서 추가로 ① 최초 목격자(피해자의 청바지 버클과 지퍼가 열려 골반 부위까지 내려가 있었는데 속옷은 보이지 않았음), ② 출동 경찰관(바지가 열려 양쪽 끝단이 '세모' 형태로 접힌 상태였음), ③ 피해자의 언니(응급실에서 환자복으로 갈아입힐 때 B○○의 다리 한쪽에 속옷이 걸쳐진 것을 발견함)의 각 증언이 있었음
- 결국, 피고인이 강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치명적인 가격을 통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에서 그녀의 옷을 벗기다가 발각이 우려되는 상황에 처하자 서둘러 현장을 벗어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음

▶ 재판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사실 등을 반영하여, 피고인의 강간살인미수 범행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강간등살인)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음

※ 「강간살인미수죄」는 성폭력처벌법 제15조, 제9조 제1항, 형법 제300조, 제297조에 의해 처벌되는 특별형법범죄에 해당함

※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살인미수죄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남겨두었음

② 대검 DNA 재감정 결과 피고인의 유전자형 검출

- 경찰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의하면, 위 청바지 바깥쪽 엉덩이 부분에서만 피고인의 Y염색체 유전자형이 검출되었고, 이로써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내지 옷을 벗긴 행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였음

- 항소심 재판부의 DNA 재감정 결정에 따라 대검 유전자 감식실에서 다시 피해자가 사건 당시 착용한 의류 4점(청바지, 팬티, 상의, 가디건)의 총 121개 부위에서 샘플을 채취하여 정밀감정을 진행한 결과,
 - ‘청바지 안쪽의 허리, 허벅지, 종아리 부분’, ‘청바지 바깥 쪽의 허리 부분’, 가디건 1곳 등 총 5곳에서 피고인의 Y염색체 DNA형을 검출해 내었음

▶ 정밀 감정으로 피고인의 DNA가 새로이 검출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내거나 원래대로 수습할 때 접촉 가능성이 높은 부분(특히, 피해자 청바지 안쪽 허리, 허벅지, 종아리)으로, 피고인의 강간살인미수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에 해당함

③ 새로운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반영하여 구형 가중

-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엽기적일 만큼 잔혹하고 대담한데도, 오히려 “구치소를 탈출해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”고 구금 중 발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아 엄정한 처벌과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필요함
- 부산지검에서 피고인의 위협행위에 대한 여러 자료를 확보하여, 이를 재판부에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음

▶ 변경된 죄명의 법정형,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황 등을 감안하고 1심의 구형을 가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5년 및 위치 추적전자장치부착 등의 구형 의견을 개진하였음

V

향후 계획

-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,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심리·물리 치료 지원 등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진행하겠음 ☐